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용 유닛을 위한 비상사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 1차

비상사태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ERAP-C19)은 유자격 저소득층 가정을 대신하여 2개월 동안, 한달에 750달러까지 (최고 1,500달러까지 보조)집주인에게 주거용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누가 자격이 됩니까: 주거지를 유지하고/혹은 체납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보조가 필요한 주거용 세입자

1. 글렌데일 주민이어야 합니다.
2. 합법적 임대유닛(혹은 방을 서비스)을 임대해야 하고 현재 임대계약서나 서비스 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과금 고지서와 우편 서비스 등의 추가 정보로 유닛에 거주하는 임대인 가구주로써 가구주를 확립해야 합니다.
3. 저소득층 가구(80%와 지역 중간소득 이하)로 자격이 맞아야 합니다. HUD의 규정에 따라 총 가구 소득이 유닛의 한 가구수마다 아래 최대값을 넘으면 안됩니다. 신청인은 소득자격을 증명하는 출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수입 분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저소득층(지역중간수입 80%)	\$58,450	\$66,800	\$75,150	\$83,500	\$90,200	\$96,900	\$103,550	\$110,250

4.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가 피해에 해당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유급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유로 인한 수입의 손실 (예. 해고, 근무시간 손실, 수입 감소 등)
 - 코로나19로 아프거나 코로나19에 걸린 가구/가족을 간병하는 이유로 인한 수입의 손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별도 본인부담비용 (예, 휴교로 인한 육아, 의료비용, 혹은 정부가 발급한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등)
 - 비상사태동안 집에 있고, 자가 격리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 모임을 피하는 정부 보건명령의 의무사항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
 - 코로나19 비상사태와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 인한 수입의 손실
5. 같은 목적으로 지방, 주, 연방정부기관에서 비상사태 보조금을 이미 받았어야함 (IRS에서 발급한 연방정부 경제부양 체크는 이 규칙에서 면제된다)
6. 임대 유닛의 건물주/집주인과 가족 관계가 아니어야함
7. 섹션8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거나, 시정부가 후원하는 저비용주택 프로젝트에 현재 거주하거나, 다른 종류의 주택보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됨

신청하는 방법: 1차 신청서는 2020년 7월 1일 (12시 정오)부터 2020년 7월 15일 (12시 정오)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1일 12시 정오에 ERAP-C19 신청서 링크를 Glendaleca.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ERAPCOVID19@Glendaleca.gov 으로 이메일하거나 (818) 548-2069으로 질문하십시오.